

## 입양 정보법에 따른 친부모 진술서

본 문서의 원본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 입양 사무소(Adoptions Office), 혹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입양 기관의 파일에 보관됩니다. 본 문서에 서명한 친부모에게는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섹션 A: CDSS 입양 사무소나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입양 기관의 위임 대리인, 혹은 입양 서비스 제공자(Adoption Service Provider, ASP)가 작성합니다.]

**SECTION A: To be complet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DSS Adoptions Office or a California licensed public or private adoption agency or an Adoption Service Provider (ASP).**

BIRTH PARENT'S NAME (친부모의 이름)

CHILD'S NAME (아동의 이름)

CHILD'S BIRTHDATE (아동의 생년월일)

TYPE OF ADOPTION (입양 유형)

Independent (독자적 입양) 또는  Agency (기관을 통한 입양)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친권의 종료) 또는  Relinquishment (포기)

Original copy will be maintained by (원본은 아래 기관에 보관됩니다).

CDSS, 744 P Street, M.S. 8-12-31, Sacramento, California 95814 (독자적 입양 케이스 또는 입양 사무소 케이스의 경우 모두 이 박스에 표시) (CHECKMARK this box for ALL Independent Adoptions or Adoptions Office Cases)

-또는- (OR)

\_\_\_\_\_  
Name and Address of California Licensed Adoption Agency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의 이름 및 주소)

**섹션 B: CDSS 입양 사무소나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입양 기관의 위임 대리인, 혹은 ASP의 입회 하에 친부모가 작성 및 서명합니다.**

가족법 8702 및 8818절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부모로서 귀하가 CDSS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기관명 및 주소는 위에 표시)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하의 건강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자녀를 위해 최선입니다.
2. CDSS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기관명 및 주소는 위에 표시)에 귀하의 병력이나 사회 생활 기록과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올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CDSS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에 친부모인 귀하의 최신 주소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포기서 또는 동의서 원본은 입양 절차가 처리된 카운티의 서기 사무소(office of the county clerk)에 보관됩니다. 상급 법원 판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양 절차의 당사자, 각 당사자의 변호사, CDSS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원본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4. 가족법 9203절에서는 입양되었다가 21세에 도달한 자에게 CDSS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기관명 및 주소는 위에 표시)에 본인의 친부모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청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과 주소 공개 희망 여부를 아래 6번의 해당 박스에 체크로 표시하십시오.
5. 친부모로서 귀하는 본인의 이름 및 주소 공개 희망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취지의 공증 받은 서신을 우편 영수증 청구(RRR) 등기 우편으로 CDSS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입양 기관(기관명 및 주소는 위에 표시)에 발송함으로써 변경 가능합니다.
6. 위의 4번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자녀에게 공개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아래의 해당 박스에 체크로 표시하십시오.

예, 본인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원합니다.

아니오. 본인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기관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친부/모의 서명

날짜

CDSS/인가 받은 입양 기관 대리인 또는 ASP 서명

날짜

**섹션 C: CDSS 입양 사무소, 캘리포니아 주의 인가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입양 기관의 위임 대리인 또는 ASP가 섹션 B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증인이 본 섹션을 작성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서명 시 공증인 앞에서 작성 및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

**\*\*COMPLETED BY NOTARY PUBLIC\*\***

The Notary Public must staple the Acknowledgement document to this form and sign and date below:

SIGNATURE OF NOTARY

DATE